

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

성 명	(한글) (한자)		주민등록 번호	-	사 진		
현 주 소			연락처	집			063) -
				H·P			- -
등록기준지 주 소			E-mail				
학 생 성 명	학년/반	학 년 반	자격 확인	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여부		해당 ()	미해당 ()
	성 명			기타	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여부		해당 ()
			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인지여부		(예, 아니오)		
경 력 및 자기소개							
입 후 보 소 견							

- ★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고, 학력은 기재하지 않음
- ★ 2008년 1월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「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‘호주’란은 삭제 되고, ‘본적’을 ‘등록기준지’로 변경

【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항】

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2015년도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.

2015년 3월 일

입후보자 성 명

(인)

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